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017
----------	-------

발의연월일 : 2026. 7. 16.

발 의 자 : 송옥주 · 윤준병 · 김성범
문대림 · 임미애 · 안태준
주철현 · 황명선 · 강준현
김재원 · 이개호 · 염태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농어촌지역의 유휴부지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도록 지원하고, 그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주민참여형 지역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농어촌마을공동체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3조).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추진, 운영,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운영, 지역 중간지원조직 설립·운영, 계통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다. 사업의 지정, 수익의 사용, 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6까지 신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농어촌마을공동체”란 농어촌지역 마을소득형 재생에너지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협의체 또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8. “농어촌마을소득형 재생에너지사업”이란 농어촌지역 마을공동체가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에 참여하고, 사회적 환원을 위해 그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민의 소득 증대 및 배분, 농어촌마을공동체의 복리 증진 또는 지역공동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농어촌마을공동체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의 추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마을공동체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23조의3(농어촌마을공동체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 조사
2. 부지 확보 및 인허가 절차
3.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 및 유지보수
4. 주민참여 및 공동체 조직의 구성·운영
5. 전력계통 접속·연계 우선 검토 및 사업성 확보
6. 시·군 및 시·도 농어촌마을공동체재생에너지지원센터 설치·운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4(농어촌마을공동체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을 농어촌마을공동체재생에너지 지원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신청절차, 지정의 취소 및 사후관리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5(농어촌마을공동체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의 수익의 사용 및 환

원) ① 농어촌마을공동체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은 주민의 소득 증대 및 농어촌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배분, 적립,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은 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익의 투명한 관리와 부정사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의6(농어촌마을공동체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의 평가 및 보고) ①

농어촌마을공동체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의 운영실적 및 수익의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의 성과, 주민참여도 및 지역환원 효과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u><신 설></u>	제3조(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7. “ <u>농어촌마을공동체</u> ”란 <u>농어촌지역 마을소득형 재생에너지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자율적으로 구성된 협의체 또는 법인으로</u>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8. “ <u>농어촌마을소득형 재생에너지사업</u> ”이란 <u>농어촌지역 마을공동체가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에 참여하고, 사회적 환원을 위해 그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민의 소득 증대 및 배분, 농어촌마을공동체의 복리증진 또는 지역공동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을</u> 말한다. <u>제23조의2(농어촌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의 추진) ①</u>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u>
<u><신 설></u>	
<u><신 설></u>	

<신 설>

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마을 공동체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농어촌마을공동체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 공동체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 조사
2. 부지 확보 및 인허가 절차
3.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 및 유지보수
4. 주민참여 및 공동체 조직의 구성·운영
5. 전력계통 접속·연계 우선 검토 및 사업성 확보
6. 시·군 및 시·도 농어촌마을공동체재생에너지지원센터 설치·운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신 설>

<신 설>

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4(농어촌마을공동체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을 농어촌마을공동체재생에너지 지원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신청절차, 지정의 취소 및 사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5(농어촌마을공동체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의 수익의 사용 및 환원) ① 농어촌마을공동체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은 주민의 소득 증대 및 농어촌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배분,

<신 설>

적립,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은 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익의 투명한 관리와 부정사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의6(농어촌마을공동체재생 에너지 지원사업의 평가 및 보고) ① 농어촌마을공동체재생 에너지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의 운영실적 및 수익의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의 성과, 주민참여도 및 지역환원 효과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